

第109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 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4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所得支援및 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公共施設內의 新聞·福券販賣臺, 賣店및 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汚水·糞尿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6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8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795
번호	

제출년월일 : 2001.2.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함에 있어 시와 자치구 간 업무의 일관성 및 공조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간 도시관리국 소속 도시계획과에서 처리해 온 업무 중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업무를 행정관리국 소속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생활복지국 소속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여온 가스시설 및 난방시공업 업무가 전문건설업에 통폐합되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로 이관하여 처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국 분장사무 이관

- 도시관리국 분장사무 중 제7조제2항제8호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관리국 분장사무 중 제4조제2항제43호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
- 생활복지국 분장사무 중 제6조제2항제17호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건설교통국 분장사무 중 제8조제2항제24호에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

3. 개정근거

-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부서 조정협조 (서울시조직12200-65,2001.1.17)
-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부서 조정계획(총무12200-120,2001.1.31)
- 규제개혁 이행실태점검결과에 따른 업무이관(지경58110-202,2001.1.31)

4. 예산수반사항 : 불필요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7호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제8조제2항에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행정관리국) ① (생략)</p> <p>②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4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조(행정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42.(현행과 같음)</p> <p>43. <u>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u></p>
<p>제6조(생활복지국) ① (생략)</p> <p>②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16.(생략)</p> <p>17. <u>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p>	<p>제6조(생활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16.(현행과 같음)</p> <p><삭제></p> <p>18.~32.(현행과 같음)</p>
<p>제7조(도시관리국) ① (생략)</p> <p>②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7.(생략)</p> <p>8. <u>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u></p>	<p>제7조(도시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7.(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8조(건설교통국) ① (생략)</p> <p>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2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8조(건설교통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23.(현행과 같음)</p> <p>24. <u>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p>

2.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96
----------	-----

제출년월일 : 2001. 3.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공개 제한에 있어 제한 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조항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은 물론 주민의 불편·부담사항을 줄이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재정운영상황의 주민에 대한 공개 제한 중 이미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정책으로 공개될 경우 공익에 저해되는 사항” 및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제한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므로 삭제(안 제5조 중 제2호 및 제4호)
- 공개제한 대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업” 및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의사결정 과정 또는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및 입찰계약에 따른 예가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구체화(안 제5조 중 제1호 및 제3호)

3. 개정근거

○2000년도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00.9.28)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의사결정 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입찰계약에 따른 예가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민공개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주민공개제한) ----- -----
1. <u>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u>	1. <u>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u>
2. <u>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정책으로 공개될 경우 공익에 저해되는 사항</u>	<삭 제>
3. <u>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u>	3. <u>입찰계약에 따른 예가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u>
4. <u>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u>	<삭 제>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97
----------	-----

제출년월일 : 2001. 2. .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용자금 대부신청 시 “연대보증인 설정” 조항 삭제(안 제6조제2항)
- 용자금의 반환사유 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조항 삭제(안 제16조제1항제1호)

3. 개정근거

○2000년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00. 9. 28)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용자금 대부신청) ①(생략) ②제1항의 대부신청 시에는 서울시·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명 내지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1명의 보증인을 세울 경우 보증인 자격은 재산세 5만원이상 납부자로 하고, 2명의 경우에는 재산세 3만원이상 납부자로 한다.	제6조(용자금 대부신청) ①(현행과 같음) <삭제>
제16조(용자금의반환) ①구청장은 용자금을 대부분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용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 4.(생략)	제16조 (용자금의반환) ① ----- ----- ----- -----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4.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99
----------	-----

제출년월일 : 2001. 2. .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종로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도록 통보된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보다 발전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신청 구비서류 삭제(안 제4조제3호)
- 사업의 의무사항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그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대리인을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로 한정하고 설치계약 신청서에 위탁인을 명시토록 함(안 제6조)

3. 개정근거

○2000년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00.9.28)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설치계약신청서에 위탁인을 명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장애인수첩, 생활보호대상자, 순국선열유족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제4조(신청) ----- -----</p> <p>1. ~ 2. (현행과같음)</p> <p><삭 제></p>
<p>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설치계약신청서에 위탁인을 명시한다.</p>

5.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0
----------	-----

제출년월일 : 2001. 3.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규정을 폐지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 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심의한 바, 사적재산을 침해하고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인 조항과 지나치게 사소한 내용은 주민들의 양식과 필요에 맡겨야 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 범위 삭제(안 제4조)
- 부대시설 삭제(안 제5조)
- 관리인의 지정 삭제(안 제7조)
-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삭제(안 제8조)
- 유지·관리기준 삭제(안 제9조)
- 화장실의 개방 삭제(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화장실의 개방 일부 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4항)
- 시설점검 삭제(안 제11조)

3. 개정근거

○2000년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00.9.28)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800 호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중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를 “구청장은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4항중 “구청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u> 2.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u> 3. <u>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u> 4. <u>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u> 5. <u>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u> 6. <u>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u> 7. <u>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u> 8. <u>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u> 9. <u>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u> 10. <u>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u> 11. <u>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u> 12. <u>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u> 13. <u>관광진흥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종합휴양시설</u> 14. <u>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u> 15. <u>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u> 16. <u>기타 구청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u> 	<p><삭 제></p>
<p>제5조(부대시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신체장애자용·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7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삭 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u>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p><삭 제></p>
<p>제9조(유지·관리 기준) <u>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의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1회 이상 도색할 것 	<p><삭 제></p>
<p>제10조(화장실의 개방) ① <u>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u></p> <p>② <u>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u></p>	<p>제10조(화장실의 개방) ① <삭 제></p> <p>② <u>구청장은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u> <u>-----</u> <u>-----</u> <u>-----</u></p> <p><삭 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④구청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11조(시설점검)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 ----- -----</p> <p><삭제></p>

6.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예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1
----------	-----

제출년월일 : 2001.2.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2000년 제1차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규제사무로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조항 중 정화조 청소업자가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기준이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소업자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설기준이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때로 수정하여 우리 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조항 개정(안 제18조제1항)
- 정화조 청소업자가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때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3. 개정근거

○2000년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00. 9.28)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규칙 제15조, 제21 및 제53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를 “규칙 제53조 및 제94조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u>규칙 제15조, 제21조 및 제53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u>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8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 ----- ----- <u>규칙 제53조 및 제94조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때</u> ----- ----- ②(현행과 같음)

7.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2
----------	-----

제출년월일 : 2001. 3. .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2000. 8. 6) 및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확정('99.4.20, 2000.9.28)으로 규제사무로 분류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제10조제2항제4호의 “배출 3일 전” 신고규정 삭제
- 제10조제3항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정을 삭제
- 제10조제4항,제5항에 5톤 미만 배출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신설
- 제11조제1항,제2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규정 폐지
- 제14조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 2회에서 년 1회로 개정
- 봉투판매소의 지정(폐기물관리조례 제24조제2항) 조항 삭제
- 게시판 부착 의무(폐기물관리조례 제24조제3항) 조항 삭제

3. 개정근거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제1회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통보(기예05090-1318, 2000.9.29)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중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물품명·크기·수량 등을”을 “배출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물품명·크기·수량 등을”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를 “구청장이 폐기물의”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이 경우 영업대상폐기물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포함된 업자에 한한다)

⑤제4항제1호의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운반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 배출장소,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 및 운반차량, 운반장소, 운반기간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시에는 운반차량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부착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소유 차량으로 운반 시에는 적정 운반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등 적정처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중 “년 2회(반기별 1회)”를 “년 1회”로 한다.

제24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5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p> <p>①(생 략)</p> <p>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p> <p>1. ~ 3.(생 략)</p> <p>4. 대형생활폐기물은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하며, 다만, 배출자가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배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생 략)</p> <p>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p> <p>①(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현행과 같음)</p> <p>4. -----배출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물품명·크기·수량 등을 ----- ----- -----</p> <p>5.(현행과 같음)</p> <p>③ ----- 구청장이 폐기물의 -----</p> <p>④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p> <p>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이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포함된 업자에 한한다)</p> <p>⑤제4항제1호의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운반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 배출장소,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 및 운반차량, 운반장소, 운반기간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시에는 운반차량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부착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소유 차량으로 운반 시에는 적정 운반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등 적정처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p>

<신 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u>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수거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지역 대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에는 수거 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및 일반지역은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성상별로 보관 시설 또는 규격용기를 배출량에 따라 충분히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 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4조(대형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수수료 과징의 적정 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u>년 2회(반기별 1회)이상</u>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제14조(대형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 ----- ----- ----- 년 1회 -----</p>
<p>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 면적, 가옥, 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u>별표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u></p>	<p>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삭 제></p> <p><삭 제></p>

[별지]

(별지 제11호 서식)

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신고인	상 호(명 칭)		배출자와의 관계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배출장소(주소)	(전화 :)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배출 사유			배출(운반)기간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운 반				처 리		
		운반자	운반장소	운반량	차량번호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종로구청장(인)

